

한경훈 / 5월 / 실전 GS B형 / 3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29059	17	11.5	15.5	14	58	1	0.76%	6	131
541730	15.5	12.5	16	13	57	2	1.53%	4	
542136	17	12	15.5	12	56.5	3	2.29%	5	
541039	15.5	12	16.5	11	55	4	3.05%	5	
541021	15.5	11	15	13	54.5	5	3.82%	5	
542705	14.5	12	16	11.5	54	6	4.58%	4	
542758	17	11	16	10	54	6	4.58%	5	
540966	17.5	11	12	13	53.5	8	6.11%	5	
540968	17	11	13.5	12	53.5	8	6.11%	4	
542878	15	12.5	14	12	53.5	8	6.11%	5	
535316	15.5	11	15.5	11	53	11	8.40%	6	
541017	15	12	16	10	53	11	8.40%	5	
529402	17.5	10.5	14	10	52	13	9.92%	5	
541674	16	11.5	11.5	13	52	13	9.92%	5	
529165	13.5	10.5	14	13.5	51.5	15	11.45%	5	
529237	15.5	12	11	13	51.5	15	11.45%	5	
540378	14	11	15.5	11	51.5	15	11.45%	4	
540975	16	10.5	15	10	51.5	15	11.45%	4	
541034	16	10.5	15	10	51.5	15	11.45%	5	
540376	15	11	15	10	51	20	15.27%	5	
541045	13.5	11	14.5	12	51	20	15.27%	5	
540959	14.5	10.5	15.5	10	50.5	22	16.79%	4	
540977	15	10	14	11.5	50.5	22	16.79%	5	
541244	13.5	11.5	13	12.5	50.5	22	16.79%	5	
535412	17	8	12.5	12	49.5	25	19.08%	5	
541025	14	11.5	11	13	49.5	25	19.08%	6	
535329	14.5	10.5	12	12	49	27	20.61%	5	
540963	14	12.5	13.5	9	49	27	20.61%	4	
541012	13.5	13	11.5	11	49	27	20.61%	5	
541019	16	11.5	12.5	9	49	27	20.61%	5	
541306	13.5	11	11.5	13	49	27	20.61%	6	
540372	14	9	14.5	11	48.5	32	24.43%	5	
540965	16	10.5	14	8	48.5	32	24.43%	4	
541011	15.5	10.5	11.5	11	48.5	32	24.43%	5	
541037	14	12	14.5	8	48.5	32	24.43%	5	
542137	10	8	18.5	12	48.5	32	24.43%	6	
528949	14.5	11	12.5	10	48	37	28.24%	4	
540971	15	10.5	13.5	9	48	37	28.24%	4	
541008	15	11.5	10.5	11	48	37	28.24%	5	
541029	15.5	11.5	13	8	48	37	28.24%	4	
541228	18.5	10.5	13	6	48	37	28.24%	5	
542587	14.5	11	14.5	8	48	37	28.24%	5	
542797	12.5	11.5	12.5	11.5	48	37	28.24%	5	
542488	10.5	10.5	13.5	13	47.5	44	33.59%	5	
540969	15	10.5	11.5	10	47	45	34.35%	4	
541006	15	10	10	12	47	45	34.35%	6	
541031	7.5	10.5	17	12	47	45	34.35%	6	
541010	14.5	11	13	8	46.5	48	36.64%	5	
541015	15	11.5	14	6	46.5	48	36.64%	5	
540366	13.5	11	12.5	9	46	50	38.17%	6	
541036	15	12	14	5	46	50	38.17%	5	
242122	11.5	10	13	11	45.5	52	39.69%	6	
528964	14.5	10	13	8	45.5	52	39.69%	5	
535617	15.5	8.5	10.5	11	45.5	52	39.69%	5	
541007	16	12	8.5	9	45.5	52	39.69%	4	
541949	11	12	11.5	11	45.5	52	39.69%	4	
542756	17	10	11.5	7	45.5	52	39.69%	4	
540967	13	11	14	7	45	58	44.27%	5	
541043	13.5	11	12.5	8	45	58	44.27%	4	
528987	11.5	7	12	14	44.5	60	45.80%	5	
535464	14	10.5	10	10	44.5	60	45.80%	4	
540360	14	12	9.5	9	44.5	60	45.80%	5	

540354	16	10	7	11	44	63	48.09%	5
540375	14	12	10	8	44	63	48.09%	5
540960	14	10	12	8	44	63	48.09%	5
529016	16	11	10.5	6	43.5	66	50.38%	6
540353	13.5	9	11	10	43.5	66	50.38%	4
540365	13.5	9.5	10.5	10	43.5	66	50.38%	6
540980	10.5	9.5	11.5	12	43.5	66	50.38%	5
528944	15.5	4	10.5	13	43	70	53.44%	4
535192	12	7.5	11.5	12	43	70	53.44%	4
541003	11.5	10	11.5	10	43	70	53.44%	5
541005	13.5	11	10.5	8	43	70	53.44%	4
541027	12	9.5	11	10.5	43	70	53.44%	5
541952	12	10.5	12.5	8	43	70	53.44%	5
529277	14	10.5	10	7	41.5	76	58.02%	5
535211	14.5	7.5	11.5	8	41.5	76	58.02%	4
540355	13	10	10.5	8	41.5	76	58.02%	5
541041	11	10.5	10	10	41.5	76	58.02%	5
529129	14	7	11.5	8	40.5	80	61.07%	5
541042	12	10	12.5	6	40.5	80	61.07%	4
540367	14	9.5	13.5	3	40	82	62.60%	6
540370	10.5	8	12.5	9	40	82	62.60%	6
540979	12.5	10	14.5	3	40	82	62.60%	6
541035	13.5	10	11.5	5	40	82	62.60%	4
535333	7	9	11	12	39	86	65.65%	5
540356	12.5	7.5	9	10	39	86	65.65%	5
540970	14	11	5	9	39	86	65.65%	4
541660	14	9	11	5	39	86	65.65%	5
541669	8	10	13	8	39	86	65.65%	5
541253	11.5	10.5	11.5	5	38.5	91	69.47%	5
535319	13.5	7	9	8	37.5	92	70.23%	5
541659	10	9	9.5	9	37.5	92	70.23%	5
535258	10.5	8	7.5	11	37	94	71.76%	4
528985	13	8	9	6	36	95	72.52%	5
535239	11	11	12.5	1	35.5	96	73.28%	5
535325	15	10.5	9.5	0	35	97	74.05%	5
535321	14	6.5	8	6	34.5	98	74.81%	5
535882	13.5	8	8	5	34.5	98	74.81%	5
540976	11	9	5.5	9	34.5	98	74.81%	5
535255	11	9	6	8	34	101	77.10%	5
540364	14.5	4	9	5	32.5	102	77.86%	5
535310	11	9	10	2	32	103	78.63%	5
541906	11.5	10	8.5	2	32	103	78.63%	5
540358	12	10	8.5	1	31.5	105	80.15%	3
540971	15	6	5.5	5	31.5	105	80.15%	5
535327	10	8	8	5	31	107	81.68%	5
540361	10	10	10.5	0	30.5	108	82.44%	5
540371	7.5	9.5	6	7	30	109	83.21%	5
535218	13	8.5	8	0	29.5	110	83.97%	6
542782	10.5	10.5	8.5	0	29.5	110	83.97%	5
535994	13	8	8	0	29	112	85.50%	5
535244	1	7.5	7	13	28.5	113	86.26%	5
541022	14.5	5	8.5	0	28	114	87.02%	5
541691	7	12	9	0	28	114	87.02%	5
535345	10	0	11.5	6	27.5	116	88.55%	5
541016	12	8	7.5	0	27.5	116	88.55%	6
535647	9.5	6.5	7	4	27	118	90.08%	4
540964	9.5	10	7.5	0	27	118	90.08%	6
541654	9	10.5	3.5	4	27	118	90.08%	5
535161	9	4	9.5	4	26.5	121	92.37%	5
535217	10	5	8.5	3	26.5	121	92.37%	5
541032	12.5	11	2	0	25.5	123	93.89%	5
541040	5	2	12	4	23	124	94.66%	5
541695	11	2	8	2	23	124	94.66%	5
536108	10	9	2.5	0	21.5	126	96.18%	4
541038	12	9	0	0	21	127	96.95%	5

535348	10	0	1	8	19	128	97.71%	5
540972	7	7	3.5	0	17.5	129	98.47%	5
535568	6	3	4	4	17	130	99.24%	5
541018	4	0	0	0	4	131	100.00%	5

한경훈/5월/실전B형/3회/1번	채점자
	이은서

1. 전반적인 총평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입니다. 상표권을 공유하는 관계 및 상표권 소멸 후 재출원/부경법상 조치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최신판례라 그런지 공부가 안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 점수가 평균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① 7호와 9~13호의 ‘타인’ 여부는 따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7호는 심사기준으로, 9~13호는 관련 판례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② 상표 유사여부에 대해 너무 많은 분량을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문제일수록 강약조절에 신경써주세요.

③ 여러 인물이 나오고, 인물 간 분쟁이 많을수록 “부정한 목적”, “신의관계” 등을 잘 포섭해주셔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과 신의관계 관련 논점 기재를 누락하거나 줄처리로 넘기신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잘 포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④ 거절이유, 무효사유 등을 전부 검토하는 문제는 그중 하나를 매우 잘 쓰시더라도 누락이 많을 경우 점수가 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각적으로 꼼꼼히 누락 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설문 2

학판검사 기본으로 깔아주면 되는 문제여서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다들 잘 쓰는 문제일수록 누가 판례 암기를 정확하게 했는지 더 잘 보입니다. 판례 암기 디테일, 검토 등을 잘 준비해주시면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설문 3

최신판례 기반으로 한 부경법상 조치 문제여서, 논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부하신다면 잘 풀 수 있는 문제니, 꼼꼼히 공부해주세요!

3. 소결

최신판례 문제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해서 신경 쓰실 사항들이 많았을 텐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경훈/5월/실전B형/3회/2번	채점자
	송예립

1. 전반적인 총평

전반적으로 모든 논점에 대해 강약을 잘 조절하여 작성하고 사안 포섭도 잘 하기에는 어려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상표 유사판단 기재에 너무 힘을 많이 써서 제90조 1항 1호와 제90조 3항 부정경쟁 목적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하였습니다.

제90조 3항의 판단기준과 신용 획득 경위에 대한 판례를 많은 분들이 누락하셨습니다. 각 판례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으면 1점씩 감점하였습니다.

또한 취소 사유 존재에 대하여 권리남용을 검토한 분들이 계셨는데 좋은 인상을 주었으므로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 상표 유사판단에 대해 굉장히 길게 작성하여 6점 넘는 분량을 적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4점이므로 최소 논점 3개 이상은 있다는 생각으로 강약 조절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2) 설문 2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하였습니다.

제34조 1항 6호에 대해 판단하신 분들은 10명 중 1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외의 거절이유는 잘 검토하셨으나, 저명한 상호에 대해 언급이 되어있으므로 6호도 반드시 누락하지 않고 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각적으로 조치를 검토하신 경우 추가 점수 드렸습니다.

3. 소결

판례를 잘 작성하였으나 일반론에 맞게 키워드를 잘 포섭하여 사안을 작성한 분들이나, 사안 포섭은 잘 하였으나 일반론 암기가 부족한 분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잘 채워가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점 또는 공부 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yerimtwins@naver.com 으로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한경훈/5월/실전B형/3회/3번	채점자
	오규해

1. 전반적인 총평

이번 3회차 3번 문제는 문제에서 검토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누락 없이 검토하면 되는 문제로, 실전A·B형 출수회차 3번 문항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할 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채점 결과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9점짜리 설문으로 乙의 주장을 설문에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며 논점을 제시해 준 문제였습니다.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서 제33조 1항 3호, ‘제33조 2항에 의하여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에서 제33조 2항,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표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에서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과 내용 (+판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목차를 적어주시면 되고 각 목차별로 각 조문의 의의, 취지, 판례 한 개 정도, 사안 포섭만 딱딱 해주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깔끔합니다.

실체적인 판단에서 ‘乙의 주장이 정당하다’로 가신 분이 종종 계셨는데 이 경우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최소한 괄호의 ‘위 甲의 각 상표 등록은 정당한 것이었다’에서 제33조 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취득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제33조 1항 3호나 제33조 2항 중 적어도 하나에서는 甲의 등록이 정당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체적이긴 하지만 ‘귀크린’ 정도로는 ‘귀 청소 용품 정도’까지는 암시할 수 있으나 ‘의료용 귀지 흡입기’까지는 직감시킨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답안에도 있듯이, 귀지나, 의료용임을 정확하게 직감시킨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체적 요소이고 제33조 2항을 통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일응 타당한 논리로 포섭하셨다면 제33조 1항 3호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신 분과 0.5점의 차이만 두었습니다.

제33조 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판단에서도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적으신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정당한 등록’이라는 문구를 보지 못하셨더라도 굳이 문제에서 ‘장기간 사용해오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던 중’이라는 사정을 제시한 이유를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코크린 판례대로 침해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甲의 고소 제기’에 따른 ‘소송의 결과’를 논하라 했으니 침해죄 성부에 대한 판단을 해주고 죄의 개수 및 형량을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의 결과로 ‘인용판결’, ‘유죄’라고 딱 적고 끝내신 분들도 많았는데 결과를 논하는 것이고, 타겟 판례대로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에 대해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침해죄 결과판단 논점이 나오면 항상 죄의 개수 및 형량 생각하시고, 인용판결이 아닌 유죄라는 단어 기억해주세요.

침해죄 판단 시 요건인 침해와 고의 모두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침해판단 시 꼭 침해죄 문제가 아닌 일단 침해 문제도 비슷한데 요건을 다 판단해주세요.. 유보상정제남, 혹은 유상보정제남 요건 조금이라도 터치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것으로 실제 시험에도 다 배점이 있기도 하고, 답안 인상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유사판단만 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상표 유사판단으로 무한정으로 사안 포섭 하신 분들도 꽤 계신데 항상 문제 푸시기 전에 분량과 시간을 생각해주세요. 사안 포섭이 중요하다 하는데 상표법이라 해서 사안 포섭만 열심히 하라는 뜻은 아니고 다른 목차와의 조화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문제를 해석할 때 13점이라는 배점을 채워야하는데 고소 -> 그렇다면 침해죄 적기 -> 침해죄의 각 요건 판단 -> ‘소송의 결과’ 판단하라 했으니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 생각.. 이러한 흐름으로 목차를 잡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표 유사판단에서 비유사로 간다면 쓸 내용이 없을 겁니다. 항상 다수의 답안을 생각하며 일반적인 다른 수험생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를 생각하며 풀어주세요. 생각보다 실제 시험도 엄청 꼬아서 낸 문제는 거의 없고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생각하며 푸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설문 3

어떻게 보면 정말 쉽고, 어떻게 보면 살짝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분명 조치를 생각해내야 하는데 딱히 확실한 조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일단 조치문제 상 다각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에 취소심판만 검토하라 했으니 취소심판만 검토해주세요. 항상 문제에서 묻는바를 정확히 파악해주세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 등을 검토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나마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취소심판의 종류를 좀 더 강하게 적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 조치 문제이니 가능한 취소심판을 배점도 채울 겸 최대한 적어주세요. 강약조절이 불안하다면 하나의 목차로 합쳐서라도 다 터치해주세요.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인데 1호와 3호 정도만 적는 등 적게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항상 다각적 검토 잊지 마세요!

3. 소결

보통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문제를 꼼꼼히 읽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문제를 해석하는 시간을 줄이진 말아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천천히 읽더라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결국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직 수없이 많이 회독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점점 아는 것도 늘어나고 회독도 많아지고 빨라지면서 갈수록 실력도 늘고, 실수도 줄어듦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암기가 잘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7월의 본인을 믿고 계속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경훈/5월/실전B형/3회/4번	채점자
	길찬우

1. 전반적인 총평

13점을 만점으로 채점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앞에서 시간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4문을 두껍게 적어주지 못하셨습니다. 시험이 두 달가량 남았는데 앞의 문제에서 시간관리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설문 1의 경우 4점짜리 문제로 욕심을 버리고 써야 합니다. 간혹 두껍게 적으신 분들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지만 그 뒤에 설문을 제대로 못 적었다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 2의 경우 대부분 잘 적어주셨습니다. 불사취 문제로 요건별로 목차를 잡아 적는 것이 가장 깔끔한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론을 맞추기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결론도 중요하므로 올바른 결론을 내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설문 3의 경우에는 제119조 1항 3호에서의 ‘사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정해진 목차가 있으므로 쉽게 적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시간관리를 하지 못해 적지 못하셨습니다.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1>

I. 식문 (1)

1. 342 항 98 여백

(1) 의의. 취지

특 국내 널리 인식된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표에 출원시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甲 상표는 잘못 기재만으로 생략되었으나 현재까지 취지성이 유지되고 있고, 2라 丙은 취지표지의 공동소유자 중 일로서 라이선스에 해당하며,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우동인 상표에 출원할 바 발한 거액이유 있다.

"취지성이 있다" (Red arrow pointing to '동일·유사' and '발한')

2. 342 항 128 후단 여백

(1) 의의. 취지

출처표적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출처 기호 등의 상표 등록 불가하다.

(2) ~~출처표적으로 인한 출처 혼동 방지를 위해~~

라이의 상표가 국내 적어도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고 그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표에 출원할 경우 발한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사안

2라 丙은 국내 취지표지의 공동소유자 중 일로서

타인에 해당하고, 상표 식별 이력에도 국지성이 유지 되고 있으며, ~~은~~ ~~수~~ 상표와 서로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출원해 바 부호 해당한다.

3. 342 항 13호 여부

(1) 의의. 국지

특정해 목적으로 출원해 상표 등록 부호를 위해 국 지의 특정한 출원으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 특정해 목적으로 출원시 등록 불가하다.

(2) 라인 여부 (특정인 여부)

*good. => 96.12.20
단위여부 이거로!!*

1) 공동출원자 중 일부 출원시 사례

특정해의 공동출원자 중 일부만이 출원해 경우에도 부호의 "특정인" ~~의~~ ~~의~~ 상품 표시로 인식될 것으로 볼 다.

2) 사례

2. ~~은~~ 국지표지의 공동 ^{출원}출원자로서 342 항 13 호의 특정인(라인) ~~의~~ ~~의~~ 상품에 해당한다.

(3) 상표 유사 여부

1) 유사판별 원칙 사례

양 상품의 외관. 음성. 관능은 일치함. 개관성. 이점성 으로 관찰하여 지명상품 개관성 입반 수표자 직관 적인 인식은 기준으로 출원인. 출원 영려 있는지 판단한다.



2) 사안

甲 상표와 2. 丙 상표를 비교하면 전형부분의 배
경과 글자색 차이가 갈수록 별 의미가 주
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한 2개 상표라고
남 대변은 불가해 바 출처등 영려 있는 유사상
표에 해당한다.

(4) 부당한 목적

1) 판단 기준 (사실)

부당한 목적 조서는 상표의 인식도, 창작성, 판상
유사성, 상품 관계, 교환 유통 및 내용, 당사자 관계
계, 입목 준비 여부, 거래실정 등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안

2과 丙은 甲 상표와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지
있는 점, 甲 상표의 "특징"이 인정되는 점, 다른
공동출자가 출원에 대해 "허락이나 용인"이 있었다
고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신용에 부당 편
승하려는 부당한 목적 인정된다.

→ 상표법 제 30조 !!

(5) 신상

출원 상품에는 34개 항 (3개 거짓이유 있다).

4. 34개 항 (20개) 여부

1) 의의. 취지

상의칙에 반하는 출원 등록 불허 규정으로서 행정
신의칙에 좇아 라인 사용·준비 양면의 동일·유사 상
표 동일·유사 상품 출원시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 라이선스 배제.**

~~2과 2은 # # 상품의 공동사용자 중 일부로서 모든
공동사용자들과 동등 양면의 신의칙에 인정되어 사용 중
입은 양면 있었음 것이고 그와 유사상품은 동일
상품이 출원하 바 불허 거침이유 있다.~~

5. 결론

2. 兩 출원일은 342 188 9.12.13.20에 거침이유
있는 바 심사관의 거침판정 **“타당하다.”**
↑ 7년.

II. 결론 (2)

1. 상경추소송의 취지-法 162조

복합한 심판에 대해 불복 수단으로서 상판 당사자 등은
상경추소송 제기할 수 있다.

2. 인 단등 상경추소송 거부

(1) 항변

① 유사판정적 공동상상, ② 유사판정적 공동상상 있다.

(2) 취지



① 당사자 중 일방이 상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심판 확정되어 재사건에 참가가 되
 는 상대방의 권리가 발생한다. < 있고, ② 상의미수 승
 소시 모든 공유사에 대해 심판정차가 재개되어
 심판정차가 선행되고, ③ 대신에 불래 심판 확정되는
 바 ~~상~~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분 수 없다.
 ④ 따라서 공유사 1인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3) 검토

상판결도 재사건에 해당하고, 일방의 신청이 허
 용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바 유
 사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안 해결

2 명의 심판정차의 제기는 적법하다.

II. 상 (3)

1. 상의 지위

(1) 민법상 공유사 관리행위 - 민법 265조

공유사는 공유재산에 대해 관리행위는 지분의 처분
 권리 경정한다.

(2) 사유권한 부여의 적법 여부

상판결이 취소가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그 이후에도

주지시로서 주지성이 유지된다면 주지공의 공동분유사
로서 라벨링 동의를 있는 경우 권리행위로서 제
3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사안

2 등 4인은 지분 합계 77.5%로서 "라벨링 지분권자에게
해당하는 바 제3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권법"
하다. 따라서 제3은 권법한 사용권을 부여받을 사
에 해당한다.

2. 제 2차

(1) 상표법상 권리 부

상표권을 인정하는 바 상표법상 권지는 불가하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

1) 부정경쟁행위 여부

제3자가 甲상표의 유사 상품을 ^{동일} 유사 상품인 침
대 등 가구에 사용하는 바 상품권치 원 명려 있
는 제3 이 가목, 나목 행위에 해당한다.

권법 권리

제3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법한 사용권은 가진자로서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제3자에게 사용금지청구(42),
손해배상청구(52), 신용회복청구 등 할 수 있다.

Good. <말>



<문제-2>

I. 서문 (1)

1. 침해금지청구 의의. 특지-법 107조

상표권자의 상호적 보호를 위해 상표권자는 제3자 무
단 사용시 침해 금지청구 할 수 있다.

2. 침해 여부

(1) 상표권 침해 의의. 특지법 108조 1항 1호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상표는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한 것으로 본다. 사안에서 甲 상표권
유형하게 결속 중이고, 관리남용 사실 등 반대하지 않는 바
반대범위 내 사용인지. 해당사유 있는지 판단한다.

(2) 상표 유사 여부

정확 perfect

한글 한글과 이러어 정확 상표의 경우 주를 한글 부으로
한칭. 인식되는 바 甲 상표는 두리판으로 한칭된 것으로
반대고 2 상표에서 제약 부은 상표라의 관제에서
식별성이 없는 바 두리판 부이 반대 해당한다.
따라서 양상표 비교해볼면 한칭이 동일하고 이러한
동일 내지 유사하여, 관념을 중의상표로서 대비 불가하는
바 유사상표이다.

(3) 상표 유사 여부

신학기라용 약제. 순화기라용 약제와 리코의약품은 그

표지. 용도. 생산. 판매 부분, 사용 범위 등을 고려한 때
 서로 유사한 바 유사 상품에 해당한다.

(4) 상표권 사용 여부

같은 등록상표를 상표권 사용중이다.

(5) 허용되는 사유 객

1) 90조 1항 1호 의미, 취지

상표의 자유사용권은 위해 상표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허용 지한다.

2) 부정경쟁방지 의미 - 상90조 3항

등록상표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호한다.

3) 인식 사용으로 인한 인식도 취득 객체

상표등록이 취득되지 않은 등록상표로 변위
 되어 하고, 부정사용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
정 없을 해 상표의 인식 부분에 의해 사용하
 였든 부정경쟁방지 사용자라 관행에서 인식도 취
득한 것으로 부 수 있다.

4) 사안

가. 상표사용 여부

같은 자신의 상표를 변경하고 사용하고 있을 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부 수 있다.

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

2은 두리팜씨약은 상호를 사용하 바 상호를
상호 관계 따라 사용 것 보 수 있
다.

다. 甲 상호 인식도 취득 여부

2023년 현재는 두리팜이 국내 소비자에게
甲 상호를 널리 알려진 바 부쟁쟁목지
있는 2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인식 사용 으로
인식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라. 부쟁쟁목지 질의

2은 2023년 현재 甲 상호 인식도 취득 이후 사
신의 상호를 甲 상품과 유사한 상호로 변경
하여 유사 상품의 사용하고 있는 바 甲 상품이
표창하려는 부쟁쟁목지 있다.

마. 인정

2에게 부쟁쟁목지 인정되므로 불가능한 사용 있다.

(6) 인정

2 사용행위는 甲 상품에 침해다.

3. 결론

2 사용행위는 甲 상품에 침해인 바 "인용표기" 여사행
다. 판정합니다.

II. 서문 (2)

1. 정발제청. 이의신청

(1) 의의. 차지- 法 492. 602

심사 정확성 및 제청자 참여 유도 위해 2명 기하에
내 누구든지 정발제청.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 342 항 7호 여부

2은 甲상품과 유사 상품을 유사 상품이 충족한 바
발견 해당한다.

(3) 342 항 4호 - 2극

甲의 상품을 발행한 사정만으로 발견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

(4) 342 항 9호. 11호. 12호. 13호

甲의 상품이 "상품으로도 널리 인식되었다면" 그와 유사
상품은 유사 상품이 충족하여 甲 신청이 편승하려는
목적에 목적 인정되고 50% 초과할등 영려되이
발견 해당한다.

(5) 2호

+6호.

甲은 342 항 7호. 9호. 11호. 12호. 13호를 이유로 정
발제청.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발제청이요!!

11.5

2. 출원 취하. 퇴거

2출원에 제청이유 있음은 기하로 출원 취하. 퇴거 권유할 수
있다.

〈문제-3〉

I. 선행 (1)

1. 기술적 대상 관련 주장

(1) 332 1항 3호 의의 취지

자라상품 식별력 또는 독립성응성 없는 상품 등록 배제
를 위해 기술적 대상 본질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귀크린은 보고 인벤션 승자는 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용품으로서 그 상품의 용도를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332 1항 3호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주장 부당하다

2. 332 2항 관련 주장

(1) 의의 취지

사용자의 지능에 기한 주장으로서 출원 지 사용으로
인해 특정한 출처로서 인식을 취득한 경우 등록 가능
하다.

(2) 사안

식품상 불분명하나 수은 클리퍼 (과 2호 재기개 사용
해운 바 2019.3.4 출원 지 국내 특제인의 출처로 인
식되었을 것인 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부당
하는 2의 주장 부당하다.

3. 권리남용 관련 주장

(1) 무효로 된 것이 명백한 경우 위법성

무효로 된 것이 명백한 상품권이나 기호 권리 행사는 허용한 경우 실질적 당사자 경쟁, 공익 이익, 상품 판매 목적에 반하는 바 허용될 수 있고 침해소송 법원은 주장 다투 판단 위해 무효사유 심리. 판단할 수 있다.

(2) 형사처벌의 경우

무효로 된 것이 명백한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다는 견해 있다.

(3) 사안

앞서 살펴본 바 甲의 등록상표 1과 2는 332 조 3항 해대 없고 사용이 의한 식별력 취득으로 등록권이 무효사유 없는 바 2 주장 부당하다.

II. 질문 (2)

1. 침해행위 - 法 230조

상품권 침해 행위를 위해 고의로 상품권 침해행위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판단

① 제3자의 침해행위 생립, ② 제3자 고의는 아니다.

3. 침해 여부

(1) 2 사용상품 1

2 사용상품 1은 甲의 등록상품 1 및 2와 그 현상이 매우 유사하고 의견도 상당정도 유사하다고 분석 있으며, 특히 귀청의 용품으로 관념된 것인 바 유사상품은 동일 내지 유사 상품이 사용한 바 상당한 점. 충돌시키는 사유 등 보이지 않아 甲 상품에 침해다.

(2) 2 사용상품 2

2 사용상품²은 그 현상이 귀귀크린으로 甲 상품 1, 2와 서로 유사하며, 의견에서도 영어나 한글의 차이가 불과한 점, 관념 또한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한 바 甲 상품에 침해다.

4. 고의 여부

(1) 판단 방법 취사

일반인의 평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양자성이 그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

(2) 사안

상문상 불명확하나 甲의 등록상품 1, 2는 甲의 사용으로 인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던 중 그와 유사한

상품권 사용하고 있는 바 2은 甲의 등록상품 1, 2 2개
 재 사심을 안았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사용행위가
 등록상품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의 인정된다.

5. 개의 개수 판단

(1) 1개 개의 성립 판단 취사예

수개의 등록상품이 있는 경우 각 상품권 별 1개의
 개가 성립한다.

(2) 사례

甲의 등록상품 1에 대해 침해행위에 대해 2022. 6. 1
 부터 2023. 7. 31까지 판관하여 하나의 개 성립하고,
~~등록상품~~ 2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 동일 판관하여
 하나의 개 소성립하는 바 총 "2개의 침해개 인정
 된다.

6. 형량 판단

(1) 상상적 경합 취사예

하나의 주체가 여러 침해행위 인정될 경우 각
 침해개는 상상적 경합에서 더 중한 개에 따라
 처벌한다.

(2) 사안

2의 사용상품 각 침해행위에 대해 상당한 상당 관계
 가 성립하므로 더 중한 형량에 따라 처벌한다.

1. 결론

2의 침해행위 및 2의 인정되고 2개의 기 성립하든
 바 치중으로 더 중한 형량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II. 쟁문 (3)

1. 1192 항 1호 최소심판

(1) 의의. 조치

상품권과 복제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 방지권 위해
 상품권과 복제사용시 최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사안

甲이 상표 등록 이후 크약 등록상품과 유사한 상품
 을 사용하거나 유사 상품에 등록상품과 동일·유사 상품
 "사용했다면" 별한 최소사유를 이유로 최소심판 청구
 하여 인용심판 얻을 여지 있다.

2. 1192 항 3호 최소심판

(1) 의의. 조치

불사용에 대한 제재 및 사용 축소를 위해 등록 후 3년 이상 불사용한 경우 취소될 수 있다.

(2) 사안

甲이 2020. 2. 14 등록 이후 ^{3년동안} 상표를 광범위한 사유 없이 국내에서 "지켜 사용해 바 없었다면" 불허 취소사유 발생함 수 있다. 다만 선행사 불명확하나 甲은 상표 1, 2를 사용해온 바 사용 계속 중인 것으로 여겨지는 바 기각심견 얻을 여지 있다.

3. 1992 항 5호 취소심판

(1) 의미, 취지

유사상품 불리 이치으로 인해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유사상품 불리 아닌 즉 부정경쟁 목적으로 동일·유사상품이 등록상품 사용시 취소될 수 있다.

(2) 사안

甲은 유사상품 1, 2를 등록받은 바 만약 등록 후 "일부 상품권을 이차하여 이차받은 자나 甲이 동일·유사상품이 등록상품을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해 경우 그로 인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생긴다면 인용심견 얻을 여지 있다. <결>

15.5

채

파이팅!

<문제-4>

14

I. 질문 (1)

1. 지정서비스 해석 원칙 취사에

(1) 서비스 범위 취사에

지정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가 사용되는 것 이외에 사회 통념상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등록서비스에 대해 사용으로 인정된다.

(2) 판단 방법 취사에

동일 서비스 해당 여부는 해당 서비스의 목적, 성격, 가치, 거래실정 등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안

공표 관련 서비스 등록한 거래실정 상 공표연습 위해 판권 행하 장비. 시판 제공 중이던 공표시판 사용업으로 판권 행되고, 무은 운영이 필요한 시판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위규 관스 공표행을 귀비하지 않았다는 사안만으로는 지정서비스가 아니라는 주장 부당하다.

II. 질문 (2)

1. (1972 항 3호 의위.최지

불사용에 대해 제재 및 사용 촉진을 위해 등록 후 3년 이상 불사용한 경우 취소될 수 있다.



2. 등록상표 사용 여부 - TEDDY VALLEY

(1) 등록상표 범위 밖이냐

등록상표 사용이라든가 문리적으로 동일한 상표 뿐만 아니라 사실통념상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표를 포함한다.

(2) 사안 - TEDDY VALLEY의 경우

甲의 등록 이후 자신의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상표 비교해보면 그 현상이 "테디 베어"와 "테디 백리"로써 서로 상이하거, 이라도 영문과 한글로써 서로 상이하. 또 등록상표의 관념은 '곰인형'이나 실제 사용상표는 '테디 베어' 등으로써 서로 상이하. 또 사실통념상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3. 상표 사용 여부 - "테디베어"

(1) 사용의 의미 밖이냐

1992 항 3호 상표의 사용이라든가 22 항 1호 각목의 상표 사용행위를 말한다.

(2) 지정상품과 무관한 사용 밖이냐

상표를 사용하긴 했으나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 위는 그러한 사용은 1992 항 3호의 정당한 상표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3) 사안

甲은 실내용습자기. 랙커 등이 "테디베어"를 표시하긴 했으나 랙커의 형상은 갖가지인 많은 채 다양한 문자를 표시하여 사용한 바 이는 지능서비스인 공표시각 제공함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정당하 이유 객

(1) 정당하 이유 의미 취지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행성으로 의회 사유 등과 같이 상품권과 등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맞다.

(2) 사안

甲의 등록상표 불사용에 대해 甲에게 귀책사유 없는 정당사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甲의 실내용습자기는 등록상표의 동일성 인정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사용은 정당사용으로 볼 수 없는 바 甲에게 정당사유 없으므로 인용심결 여생된다.

III. 질문 (3)

(1. 출제공시인 인식되지 않는 경우 취지에

1992 1항 3호에서 등록 상표의 사용 여부는 자라상품 식별의사에 대해 사용인지 여부 문제될 뿐 일반 소비자도 출제표처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자라상품식별의사 판단 방법 위시계

출제표시 가능 수행하는 경우 자라상품식별의사 있는 것으로 보나, 출제표시 가능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라상품 식별의사에 대해 사용임은 입증할만한 객관적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3. 사안

甲은 별다른 사용의 사실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으로 인식되는 표지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바 비록 일반 소비자가 출제표시처럼 인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자라상품식별의사에 대해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등록상표의 "사리홍농상 동인상 인공되는 상품의 사용"이라 1992 1항 3호 취지사유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이 하여 배 - *fresh!*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 - 1]

1. 법 343 항 7에 기재이유 존부 (2주)

(1) 인용상표 소역시 속급 (법 343 2항)

등록여부결정시 기준으로 본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바,
 등록여부 결정 전 인용상표가 인용하면 인용상표로서
적격을 상실하여 본래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안의 경우

그 및 丙은 2025.3.3.에 출원하였고 등록여부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며 인용상표는 이미 2024년
 존속기간 만료로 인용하였는 바, 본래 해당하지 않는다.

2. 법 343 항 9에 기재이유 존부 (2주)

(1) 의의, 취지

주지 상품의 신용과 수요자 출처 혼동 방지를 위해, 주지한
 상품의 유사범위 내에서 등록 불허한다.

(2) 타인인지 여부

甲 상품은 2등 8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품이고,
 출원인은 乙, 丙이며, 제 9호는 공유자 전원이 일치해야
동일인인 것으로 본래 타인에 해당한다.

(3) 상품 유사여부

1) 회사의 개념 및 평회성 회사

상품의 일부 구성이 독립하여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용바를 전체안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요부를 먼저 대비안찰한
수 있다.

2) 甲 상표 요부 - '도형부분', '날뿔'

- ① 'nf' 글자가 포함된 사각형 형상의 도형은 지정상표와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거나 미약하지 않은, 흑백의 대비가
강하여 강한 인상을 주며 2 비중도 상당하고,
- ② '날뿔' 문자부분은 지정상표와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는 문자이며 굵은 글자체로 되어 강한인상을 주며
전체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
- ③ '기구' 문자부분은 지정상표와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흔한 표지인바, ~~요부가 아니다.~~
- ④ 따라서 甲 상표 요부는 도형부분과 '날뿔' 이다.

3) 대비 - 양 상표 유사

2. 兩이 동원한 상품의 도형부분과 甲 상품의 도형
부분을 대비하면, 양 상품은 모두 정사각형 도형에
'nf' 글자가 굵은 글자체로 타이포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고 색채의 차이만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유사
한 상품이다.

(4) 소견

- ① 비주 생산상품의 주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② 상품
유사 ③ 상품 동일하므로 ④ 본는 기판이유가 있다.

3.	법 34조 1항 12호 후단 거절이유 준비 (재주)
(1)	의의, 지식 수요자 보호를 위해, 수요자 기간 영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불허한다.
(2)	사안 ① 국내에서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되었고, ② 상표 유사 ③ 상품 동일하므로 볼 수 거절이유가 있다
4.	법 34조 1항 13호 거절이유 준비 (재주)
(1)	의의, 지식 모방상품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품의 등록을 불허한다.
(2)	<u>출원인 당시 빛사용 또는 사용의사 명백하지 않은 경우 뒤늦게 출원인 당시 사용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곧바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인식도 등과 함께 부정한 목적 판단의 일 고려사항이 될 뿐이다.</u>
(3)	사안 ① 출원인 당시 권제기간 안으로 甲 상표가 등록하는 등 사용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본 규정의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u>甲 상표가 주지성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바, 1) 甲 상표의</u>

인식도, ii) 임의선택표장이고 도형부분의 창작성이 높은
전 제) 복원 상표와 인공상표가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바, 본 논
거절이유가 있다.

5. 결론 - 거절결정 타당

상표법 제 9, 12, 13호 거절이유가 있으므로, 거절결정은 타당하다. 7.7.2020

II. 서론(2)

1. 상표권 공유의 법적성질 위치

상표권 공유는 일정한 제약이 있는 점에서 항유와 유사한 성질이 있으나 이는 물체재산권으로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공유관계를 항유로 보는 영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상표법상 다른 규정이나 상표권에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상 공유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2. 상표권 공유자 1인의 권리적격

(1) 문제점

상표권취득의무는 상표법 제 124조와 같이 공통인등에 대한 영문의 규정이 없이 문제된다.

(2) 제1항

상표권취소소송에서 1인 단독의 원고재판을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합의확정의 요형에 반하지 않고, 1인의 원고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상표권취소소송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상표의 방해배제를 귀찮다 싶어 불합리한 바, 공유자 1인의 원고재판을 인정한다.

(3) 경우

상표권취소소송을 민법상 부당행위로서 배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취지에 입장이 타당하다.

3. 서문의 해명

2.丙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러한 상표를 받은 바, 2이 단독으로라도 상표권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재판도 인정되므로 상표권취소소송 제기는 적법하다.

Ⅳ. 서문(3)

1. 공유자의 관리행위 (민법 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유 지분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2. 공동보유자의 사용권한 부여 가능 제1항

Good.

① 여러 권리주체가 주지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주지표지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주지표지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민법 제 265조에 따라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써 인정한다.

② 상표권이 타에게 귀속하였으나 현재 등록된 주지표지의 경우로 상표권이 등록된 이상 상표법 제 93조를 적용할 것이 아닌 바, 전원의 동의는 필요 없다.

3. 사안의 경우

(1) A의 적법한 사용권한 유무 (적극)

주지표지의 공동보유자 중 2등 4인의 공유자가 지분 합계 77.5% . 즉 과반수로써 A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한 바, A는 적법한 권리자이다.

(2) A의 조치

1) 부정경쟁행위 여부

주지한 타인의 영업표지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인 바, 제3자의 행위는 부정법 2조 1항 가, 나목에 해당 하는 부정경쟁행위이다.

2) 조치

사용금지청구 (부정법 제 42), 손해배상청구 (동법 52), 신용회복청구 (동법 62) 가능하다.

15.5



[문제-2]

I. 선포(1)

1. 침해금지청구 의미, 특지 - 法107조

상표권자 이익 보호 및 수위자 보호를 위해, 상표권자는 상표를 유사범위에서 무단사용하는 제3자에게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침해 성립 여부(1) 쟁점 정리

① 상표는 인음 유효한 것이고 ② 같은 해방 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였는 바, ③ 반해범위 내 사용여부라 한데제한 사유 유무가 문제된다.

(2) 반해범위 내 사용여부 (적극)1) 상표 유사여부① 요부의 개념 및 필요성에

출시표시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구성,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체관념을 위하여 요부를 대비판란할 수 있다.

② 2상표 요부 - '두리판'

i) '계약'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혼란 표지로 식별력이 없고, ii) '두리판'은 조어라서 식별력이

있고 甲의 식별력 강화한 사정과 그 비중이 5음조
중 3음조로 상당하다든 절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두리팜'이 **요부**이다.

③ 甲 상표 요부 - '두리팜'

甲 상표인 '두리팜 WITHFARM' 에서 甲이 '두리팜'
만을 합법히 사용하여 인식을 취득, 식별력을
강화하였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甲 상표를 '두리팜'으
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것인 바 '두리팜'이 요부이다.

④ 대비 판단 - 양상표 유사

양 상표의 요부는 모두 '두리팜' 으로 동일한 바,
양 상표는 숫자 혼동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2) 상표 유사 여부

甲상표는 '약제' 이고 乙상표는 '원료의약품'으로
속성, 용도 등이 유사한 **유사** 상표이다.

(3) 호의 제한 사유 유무 (상표)

1) 상표법 90조 1항 1호 의의, 속지

안경 표시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안경 표시의 자유
사용을 인정한다.

2) 부정경쟁목적이 있는지 여부 (상표법 90조 3항)

① 신용을 얻어진 경위가 문제되는 때에

등록상표가 신용을 취득한 경우는 문제되지 않음



반드시 지정상품에 대한 주지성 획득은 요하지 않는다.

② 사안의 경우

ㄱ) 甲이 지정상품이 아니라 상호로서 사용하여
신용을 획득하였으나 이는 문제되지 않으며,

ㄴ) 침해자측이 2023년 등원 상호를 변경한
 경우, 상호의 창작성과 유사성이 상당한 점,
 甲상품이 획득한 인지도 등을 종합하면

ㄷ) 乙에게 부정경쟁 목적이 인정된다.

3) 소결

乙은 침해제한의 항변 불가하다.

Good.

3. 결론

침해가 성립하는 바, 인용판권이 예상된다.

Ⅱ. 서론(2)

1. 조지 ① - 정보제공/이의신청

(1) 조지 34조 1항 7호, 9호, 12호, 13호 해당여부 (적용)

① 甲 상품이 선등록 상품이고, ②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고 ③ 상호 유사 ④ 상품 유사한 바, ⑤

주지·지명성, 창작성,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

목적이 인정될 것이므로 ⑥ 본래 상징의 거짓이유가

있다.

(2) 1명 - 2명가능

상기 거절이유가 인정되는 바, 소멸 가능한 것이다.

+6회.

2. 조치 ② - 소멸 속하. 포기. 양도 권유

상기 거절이유 존재를 근거 하여 소멸의 취하

포기. 양도를 권유한 것이다.

잘하고 계십니다!!

[문제-3]

I. 식료(1)

1. 무효된 것이 명백한 권리에 기한 권리행사 취하

무효한 것 확정 전이라도 무효판정에 의해 무효로 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권리남용의

행위가 있다면 재해상당 법원은 해당 행위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무효사유를 심리, 판단하는

수 있다.

2. 甲 상표 무효사유 검토

(1) 상표 33조 1항 3호

1) 의의, 속지

기술적 표상은 자라상표식별력이나 특징차별성이 없이

증거를 불충족한다.

~~2) 동일 표시의 양자/강제에 불과한 경우 제외~~

~~상징, 호칭 등을 양자, 강제하는 것에 불과하여 두자가
상징 표시를 직감할 수 없는 경우는 보는 거리가유가 없다.~~

2) 기동성의 판라기유 제외

상품의 관념, 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질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사안

甲등록상품 1, 2는 귀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용품 등으로
관련되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동일 표시로 직감된
진인 바 보는 거리가유가 있다.

(2) 상표 사용 제한

1) 의의, 속지

상표 사용 제한 내지 기에 해당하더라도 인식을
취득한 경우 소정 요건 충족은 허용한다.

2) 사안

① 甲은 축원 신부터 상품을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② 사용
상품을 사용상품에 축원하고 ③ 상표기가 사용 및
상당한 매출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 바,
④ 적법한 등록이 가능하다.

3. 2 주장의 타당성 (부당)

2은 적법하게 등록된 甲의 상품인 행사에 대하여

권리 남용의 항변이 부당한 바, 주장이 부당하다.

II. 상표(2)

1. 침해리 의의, 취지 (제230조)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익상 취지의 규정이다.

2. 침해리 성립 요건

① 침해 성립, ② 형법 132조에 따라 고의를 요한다.

3. 침해 성립 여부

① 甲 상표권은 익음 유호한 권리이고 ② 상품이 유사하여 ③ 상표 역시 문자상표의 외관이 매우 유사한 전제까진 성립의 비슷하여 관념 관련한 취를 깨끗하게 하는 용품으로 비슷하므로 유사하다. ④ 2은 상표를 표시, 유통하는 등지표시기능이 반복되는 바, 상표권 사용하였다. ⑤ 따라서 침해 성립한다.

4. 고의 인정 여부

甲이 상해에 대하여 고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고도 甲의 등록상표 존재 및 자신의 사용이 甲상표권 반환범위에 속함을 인식하였을 것이나, 고의 인정된다

5. 병리의 개수 판단

(1) 포괄 1리 병리 4(119조)

상표권 침해가 계속된 경우 등록상표 1개마다 1개 병리 성립을 인정한다.

(2) 수개의 등록상표 침해 4(119조)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 각 리가 상상의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3) 사안

2이 2022.6 부터 2023.7.31까지 계속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면서 2사용상표 1, 2와 같은 유사
상표를 사용하여 甲 등록상표 1, 2를 침해하였는바,
총 2개의 침해리가 성립하여 각각의 침해리는
상상의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이 높게
산정되면 해당 침해리를 흡수하여 ~~형량은 상응한~~
최대 7년 이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것이다.

II. 식민(사)

1. 쟁점정리

甲이 부정사용하거나 사용권을 쟁정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부정사용은 문제되지 않음, 4제119조
1항 3호의 보사용이 문제된다.

2. 생각 가능한 상표 - 불사용주의상표

(1) 의의, 취지 - 조 119조 1항 3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불사용한
상표를 취소한다.

(2) 사안의 경우

① 甲이 당해 상표를 2020. 2. 14 등록 받은 이후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바, 취소상표청구일인
2025. 7월경 이전 3년 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은
경우에는 상표청구일 이전 3년 간 국내에서 불사용한
것이 인정된이 취소된 여지가 있다.

② 한편, 甲에게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3) 일괄 - 인용상표 가능

甲이 사용상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으로 인정
된이 취소된 여지가 있다.

15.5

27

파이팅!

[문제-4]

I. 문(1)

1. 서비스의 의의 취지에

서비스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특정한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 노무의 제공을 의미한다.

11

2.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 (제131)

서비스에 대한 광고,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3. 2 주장의 당혹 - 부담

서비스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정극 코스의 골프장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도 골프 관련 서비스의 거래실정 상 골프 연습을 위한 장비 제공이나 시코르드 골프시트 제공업인 바, '골프시트 제공업' 서비스가 아니라면 인정할 수 있다.

II. 식민(2)

1. 식민 1193 1항 3호 의의·속지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불사용한 상표권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2. 등록상표의 사용인지 여부

(1) 등록상표의 범위 (제131)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를 포함한다.

(2) 사안

甲은 등록상표인 '테디베이' 그 자체를 실내연습장 등에

	<p>표시하였는 바, 본 모건은 문제되지 않는다.</p>
3.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인지 여부
(1)	지정상품의 범위 범위
	지정상품은 2 상품과 사외통념상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2)	사안
	골프시절을 운영하였는 바, 본 모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4.	정당한 사용 여부
(1)	사용의 의미 범위
	조항 22항 11호의 사용행위이므로, 차타상품서비스의사가 있을 것을 말한다.
(2)	출처표시 의사가 없는 경우 범위
	상표법상 상품은 차타상품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포장인 바, 자기 상품,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한 사용이 아닌 경우는 등록상품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다.
(3)	사안
	<p>甲이 표시한 테리베이는 실내 연습장, 라커 등이며 간단한 행사로 갖추지 않은 단순한 목자로 표시된 바, 수의사는 이를 출처표시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이므로 甲 나아가 甲이 자기 서비스의 차타상품서비스 의사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p>

5.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 유무

甲의 이러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

6. 결론 - 인용실로 예상

甲의 불사용이 인정되는 바, 인용실로 예상된다.

II. 식민(의)

1. 정당한 사용여부라 관련하여

(1) 숙취표시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숙취표시)

음주 상품의 사용이 자라상품서비스의사에 기한 사용인사가
불계되는 것이므로, 식민에 수권자에게 숙취표시로 인식
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2) 사안

순수한 디자인에 사용이 해당하여 수권자가 숙취표시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용태양 등이 비록
자라상품서비스의사만 인정된다면 불 문간 충족할 수
안다.